

의안번호	2212212
의 퇴 인	구자근 의원
회 답 일	2025. 11. 18.
추계번호	25A446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1항) -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30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빈 점포를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

한 창업보육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다만, 현시점에서 2.3만개(2023년 기준)에 이르는 빈 점포에 대한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빈 점포는 전국에 2.3만개로 전체 점포의 10.1% 수준임

[표 1] 전통시장·상점가의 빈 점포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

지역별	전체	영업점포	자기소유점포	임차점포	빈점포	빈점포비율	기타점포	노점
전체	226,995	171,529	43,135	128,394	22,846	10.1	4,539	28,081
서울	45,516	39,421	6,857	32,564	4,433	9.7	602	1,060
부산	26,597	20,991	6,653	14,338	3,738	14.1	368	1,500
대구	17,407	12,284	3,098	9,186	3,268	18.8	600	1,255
인천	11,897	10,790	3,007	7,783	373	3.1	145	589
광주	3,284	2,546	611	1,935	212	6.5	70	456
대전	3,134	2,585	690	1,895	165	5.3	133	251
울산	5,719	3,456	659	2,797	618	10.8	62	1,583
세종	789	500	194	306	60	7.6	5	224
경기	25,313	20,602	4,440	16,162	2,174	8.6	373	2,164
강원	8,986	6,482	2,017	4,465	746	8.3	375	1,383
충북	7,410	5,408	1,762	3,646	555	7.5	161	1,286

주: 1. 영업점포 : 자기소유점포 + 임차점포

2. 기타점포 : 창고 및 사무실 등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포

3. 전체 점포수 : 영업 점포수+빈 점포수+기타 점포수+노점포 수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